

처분요구일람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종합감사 -

2021. 6. .

1.	신규채용 직원 영리업무 재직여부 확인 소홀	(주의)		3
2.	포괄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5
3.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주의)		7
4.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9
5.	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11
6.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12
7.	휴양시설 이용지원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4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신규채용 직원 영리업무 재직여부 확인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유통사업을 총괄하는 을 아래 [표 1]과 같이 신규 채용하였다.

[표 1] 신규 채용 현황

채 용 공고일	공 고 기 간	서 류 전형일	면 접 전형일	합격자 공고일	합격자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채용계약	
'19.5.7.	'19.5.7. ~5.22	'19.5.24.	'19.5.27.	'19.6.5.	●●●	'64.8.9	· (주) 대표(2016 ~) · ◇◇◇(2011 ~ 2015) · △△△(1989 ~ 2011)	'19.6.13. ~'22.6.12	'20.8.24 의원면직

주 : 합격자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주) 대표로 '19. 4월까지 재직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주)의 직장가입자로 '16. 4. 11.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진흥원 「인사규정」 제60조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거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 「인사규정」 [별표 5] “징계기준”에 따르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를 금지하여야 하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9. 6. 13. 을 신규 채용한 이 응시서류로 제출한 이력서에는 (주) 대표로 2019. 4월까지만 재직 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16. 4. 11. (주)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계속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이 2019. 6. 13. 을 임명된 날로부터 의원면직한 2020. 8. 24. 까지 14개월간 [표 2] “(주) 법인등기 현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의 대표를 겸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주) 법인등기 현황

회사성립 연월일	목 적	임원(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비고(사업자등록증)
'16.3.31.	시설경비업, 건물관리 및 청소업, 용역업 등	· 대표이사 ●●● 2016. 4. 22. 취임 · 대표이사 ●●● 2019. 4. 22. 취임	· 개업연월일 : 2016. 4. 14. · 대 표 자 : ●●●

주 : 감사일(2021. 1. 18.) 기준 공부상 (주)의 대표는 2016. 4. 22. 이후 변경되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임직원 채용 시 영리업무 재직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포괄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새로운 유통환경 조성,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8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은 품목중심 편성방식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수탁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업별로 집행목적과 용도에 맞게 과목별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하고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수탁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명과 예산액만 기재하고 예산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집행하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건, 16,285백만 원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AAA는 「인사규정」 제46조의1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소 관 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재무회계규칙」 제56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시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증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인 각종 인쇄물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직접생산증명이 없는 (주)◆◆과 2건, 36,547천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생산증명이 없는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BBB, CCC는 「인사규정」 제46조의1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40백만 원)을 시행하였다.

「〰〰〰〰〰〰〰〰〰〰 재무회계규정」에 따르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의 용역·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의 용역·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추정가격 40백만 원인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라장터 견적요청¹⁾을 통해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DDD, EEE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 견적요청은 각 공공기관이 예산수립, 입찰가격 결정, 또는 소액구매 등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견적요청을 의뢰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임

그 결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 상 예산액 대비 총 3,600천 원 과다 편성 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DDD와 EEE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 ③ GGG는 「인사규정」 제46조의1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휴양시설 이용지원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에 처음으로 “휴양시설 이용지원”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였다.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의 필요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진흥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했다.

한편 진흥원은 내부 제안제도를 통해 ○○○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 복리후생 정책인 “○○○ 직원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을 벤치마킹하여 진흥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직원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은 직원들의 연가를 사용하여 지역 관광지 등을 찾아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리후생 정책으로 직원들의 연가 의무사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추진 배경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해 2020. 1. 20. “2020 직원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 하면서 본 복리후생 정책의 추진 배경인 직원연가 의무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채 결정권한이 없는 ○○○장 업무

대행인 ㉠㉡장의 결재만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에서는 직원연가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추진한 ㉰㉱과 다르게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같은 기관 내에서 복리후생 운영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어 직원들의 연가사용에 대한 불평등 마저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같은 기관 내에서 복리후생지원 운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EEE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 ③ GGG는 「인사규정」 제46조의1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